

한국교육행정학회 소식지

THE NEWSLETTER

발행처 한국교육행정학회 (<https://keas1967.com>) / 발행인 박선형 / 편집인 박상원 / 편집팀 황은희, 채윤정, 김명신 / E-mail keas1967@daum.net
주소 (0415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 9층 902호(도화동, 마스터즈타워빌딩)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 사무국

학회의 활동사항 및 학술대회 개최, 학회관련 업무는 홈페이지(<https://keas1967.com>)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론 |

이제는 교육부가 변할 차례다

송기창 |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부의 존속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는 일이 반복된다. 교육부 폐지론이 제기될 때 교육부 존속을 지원하는 대학교수가 드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대학교수들은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이 대학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인식하는 듯하다. 이유를 물어보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규제를 일삼는 교육부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4월 8일 한국교육학회 특별교육정책포럼에서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역할 재정립’이라는 원고를 발표한 바 있다. 발표할 원고를 준비하면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연혁자료를 분석하였다. 대충 짐작은 했지만,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얻었다.

1997년 12월에 제정되어 1998년 3월 시행된 「고등교육법」은 제정 당시에 총 64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야 한다.”로 표현된 의무 조항은 총 15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부장관의 의무 조항 3개 포함)이었으나, 2022년 3월 현재, 27개 가지(枝) 조문이 추가되고 1개 조문이 삭제되어 총 90개 조문으로 바뀌었고, “~야 한다.”로 표현된 의무 조항은 총 60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부장관의 의무 조항 10개 포함)으로, 24년간 의무 조항이 4배로 늘었다. 의무 조항의 대부분은 대학을 규제하는 조항이었다.

「사립학교법」은 1963년 6월 제정되어 그해 7월 시행되었는데, 총 74개 조문, 56개 의무 조항(국가와 관할청의 의무 4개 포함)으로 출발하였다. 「고등교육법」과 비교하기 위하여 1997년 8월 개정되어 1998년 1월 시행된 「사립학교법」도 살펴 보았다. 1998년 1월 개정 「사립학교법」은 제정 「사립학교법」 대비 15개까지 조문, 3개 삭제 조문으로 총 86개 조문, 62개 의무 조항(국가와 관할청의 의무 4개 포함)이었으나, 2022년 3월 현재 시행 중인 「사립학교법」은 총 121개 조문, 126개 의무 조항(국가와 관할청의 의무 11개 포함)으로, 24년 동안 의무 조항이 2배로 늘었다. 물론 「사립학교법」의 의무 조항도 「고등교육법」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규제 조항이었다.

법률 개정의 주체는 국회이므로 법률 상 모든 규제의 책임이 교육부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반대할 경우 국회가 개정을 밀어 부치는 경우가 드물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교육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색한 결과, 1998년 이후 발의된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은 383건에 달하며, 이중 교육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17건이다.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은 294건이며, 이중 교육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98건에 이른다. 임기 만료로 폐기된 개정안이 새 국회가 열리면 다시 발의된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규제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의 발의 건수가 상상을 초월한다. 교육부가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 발의한 안전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 규제 조항 대부분이 교육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법령에 의한 규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법령과 무관하게, 또는 법령을 어기면서 행정규칙이나 사업지침으로 규제하는 것 또한 부지기수다. 가장 심각한 규제 하나를 예로 들면, 「고등교육법」 제11조제10항은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11항은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 14년째 등록금을 한푼도 올리지 못하고 동결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까지는 금융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반자발적인 동결이었지만, 2012년부터는 국가장학금 도입으로 등록금 동결이 의무화되었다. 「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모든 대학이 2012년에 등록금을 5% 정도 인하한 후 10년 동안 등록금을 한 푼이라도 올리면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가했다.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지원하려면 국가장학금 II유형에 참여해야 하고, 국가장학금 II유형에 참여하려면 등록금 동결이 필수 요건이었기 때문이다. 2019년부터 대학혁신 지원사업,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에서 국가장학금 II유형 참여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표면적으로는 대학등록금 동결을 강제하지 않으나,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등록금 동결이 필요하다. 2020년부터 입학금마저 폐지를 강요당하여 2023년 완전 폐지를 앞두고 있다.

반면,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는 재정지원 조항은 제정 이후 요지부동이다. 「사립학교법」 제43조제1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도 용어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1963년 이후 그대로 ‘지원해야 한다’가 아닌 ‘지원할 수 있다’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 3월에 「고등교육법」 제7조제3항에 “교육부장관은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매년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정기국회 개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2021년 9월에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조정)를 신설하여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는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보다 구체화 하였지만, 대학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동안 교육부의 역할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규제 덩어리로 만들어 놓는 데 일조하였고, 대학 지원을 위한 노력은 체감이 안 된다. 대학에 대한 교육부 지원의 핵심은 재정지원이다. 2019년 9월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0년~2024년)」을 보면, 현행 고등교육재정 위기 상황에 대한 분석은 생략되어 있다. 고등교육재정의 현실을 외면한 채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성과와 지원 방향만 나열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의 배경에서 대학의 체질 개선과 대학혁신의 필요성만 기술하고,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생략한 채 실효성 없는 세부 추진과제를 열거하고 있다. 대학재정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지 오래지만 이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여준 적이 없다.

2021년 대규모 정원미달 사태를 겪으면서 그해 5월에 내놓은 「학령인구 감소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은 ‘심판자로서의 교육부’의 역할을 부각시켜 대학의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 대학 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등록금 동결 해제 등 핵심을 외면한 채 주변적인 것에 그쳤고, 그나마 대학이 체감하는 수준은 아니었다. 대학재정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은 지방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수도권 사립대학이나 국립대학법인 수준으로 확충한다는 것으로, 사립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고, 혁신 지원전략의 초점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통·폐합과 폐교·청산을 지원한다는 데 있었다.

1990년대 대학종합평가가 시작되고,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도입되면서 교육부는 입만 열면 ‘대학이 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연 그동안 대학은 변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혁신평가 등 각종 사업평가, 교원양성기관평가, 교수업적평가, 강의평가, 언론기관에 의한 평가 등등 각종 평가에 시달리면서 교육부가 제시하는 평가지표에 충실하게 맞춰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왔다. 대학이 잘못된 방향으로 변화했다면 교육부가 사업설계를 잘못했거나 평가지표를 잘못 만든 탓일 게다. 즉, 각종 규제를 통해 대학변화를 이끌어온 교육부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제 교육부가 변할 차례다. 대통령을 위한 교육부, 기획재정부 눈치를 보는 교육부, 여당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교육부로는 대학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자에서 지원자로, ‘대학에 관한 교육부’의 역할에서 ‘대학을 위한 교육부의 역할’로 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 부서의 축소와 지원 부서의 확대가 절실하다. positive 규제(법령에 허용 사항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허하는 방식)를 negative 규제(법령에 불허하는 사항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로 전환하여 규제를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 대학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필요하며, 정치권의 무분별한 대학 규제 요구에 맞서는 교육부, 대학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육부의 모습을 보일 때 교육부에 대한 대학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교육부에 대한 대학의 신뢰는 대학재정 확충에서 나온다. 국제 교육세의 고등교육세 전환 및 내국세 일정률로 확보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도입하여 용도가 제한적인 사업비를 줄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한 경상운영비 지원을 늘려야 하고, 대학등록금 법정 인상을 범위 내에서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반하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아울러 등록금 동결에 따른 대학재정의 누적 결손을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의 교육부는 달라져야 한다. 5년 후 교육부 폐지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 시론 |

교육 거버넌스 변화 과정에서 짚어봐야 할 점들

장 덕 호 | 상명대 교육학과 교수

새롭게 선택받은 정부가 거의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정부조직을 어떻게든 손은 보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캠페인 과정에서 나왔던 의욕적 사자후는 어느 샌가 사라지고, 자리바꿈할 거대 야당의 의석수 앞에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이다. 정부조직 개편의 목적은 다차원적이다. 정치적으로는 국정철학의 상징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관료들에 대한 통제와 정치적 위기를 돌파할 기회를 추구하려는 것이고, 행정적으로는 정부 기능 재분류를 통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부처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대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짙다. 정부조직 개편은 이러한 정치적 목적과 행정적 목적이 서로 균형있게 반영될 때 성공할 수 있다(문명재, 2009:25).

교육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설립된 문교부를 그 뿌리로 하는 조직이다. 문교부는 1990년 교육부(노태우정부),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김대중정부),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이명박정부, 부총리 폐지), 2013년 교육부(박근혜정부, 2014년부터 장관이 부총리 겸직)로 부처의 명칭과 정부 내 위상이 달라지긴 했지만 무려 70년간 유지된 글자 그대로 전통 있는 부처이다. 각 정부에 따라 명멸을 거듭하는 부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뜻이다. 그 부처의 힘은(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소관 법령, 조직 인원, 그리고 예산 규모에 의해서 주로 가늠할 수 있다. 교육부는 우리 교육의 이념과 교육 관련 주체들의 법적 지위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부터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학교졸업자들의 소급적 학력 부여를 명기한 「1945년 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대통령령 4401호)에 이르기까지 무려 264개 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을 관장하고 있다(2022.4.7. 교육부 홈페이지 기준). 인적 규모 측면에서 56명의 고위공무원(부처 기준으로 90명의 행안부에 이어 두 번째 큰 규모)을 포함하여 647명의 본부 정원을 확보하고 있고, 36만여명의 교원 등을 보유한 명목상 공무원 정원 기준 최대 부처(2022.4.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기준)이기도 하다. 또한 2022년 기준으로 89조 6,251억 원의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 단일 부처 기준 최대 예산 운용 부처이기도 하다.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비대해진 교육관료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거대 조직인 교육부가 다시 조직개편의 칼바람을 어떻게 맞을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국민들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싹싹처럼 관여하고 있는 무수한 법령(그중 상당수가 규제와 형식에 관련한 법령임을 주지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막대한 소속 인원과 엄청난 예산운용 규모를 가진 부처를 선부르게 개편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인수위원회 시작부터 쏟아지고 있는 유관 집단과 단체들의 교육부 조직 개편과 기능 이관 반대 움직임이 이를 방증한다.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한 채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준비 없이 물리적 접합에 의존한 부처조직 개편을 시도한다면 막대한 비용 유발과 정책적 부작용과 혼선만 남길 것이라는 점을 과거 정부조직개편의 경험은 말해준다. 조직이든 사람이든 겉보다는 속을 바꾸기가 어려운 법이다. 부처 조직이라는 틀보

다 그 조직이 판단하고 실행하는 방식을 먼저 바꾸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선명한 비전과 철학의 마련, 종합적 전략의 구상, 충분한 정치적, 행정적 동기와 함께 개편에 따른 국가적 기대효과와 제시가 순서이다.

한편 떠나가는 구 정부 거대 여당이 주도하여 설치하기로 한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거버넌스 변화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여야 합의 없이 성급하게 마련되다 보니 곳곳에 미비점이 보인다. 우선 정부조직 개편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정부기능의 재분류 작업이 선행되지 못하였다. 특히 교육부와와의 관계에서 그러하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 과연 이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기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과 관련된 A부터 Z까지의 거의 모든 정책을 터치할 수도 있고, 대통령 소속위원회이기에 대통령의 관심도와 권한위임 여부에 따라 별볼일 없는 소원도성 위원회로도 전락할 수도 있다.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의 3대 핵심 사무들 즉,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제11조),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제12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제13조)을 교육부와 상호배타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교육부와와의 기능 조정이 사전에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결과이다.

무엇보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과연 이 기구가 어떻게 운영될지 예측이 어렵다. 국회 추천 9인, 대통령 지명 5인,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의회 대표자, 교원단체 추천자 2인,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인 2명,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1인, 학생 또는 청년 2인, 학부모 2인 중에서 뽑힌 21인으로 구성된다. 각 직능대표를 추천하는 과정 자체가 정쟁이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사정위원회처럼 쟁점적 정책현안에 매몰되어 사사건건 사비와 갈등을 유발할 소지도 있다. 교육부와 정책 주도권 경쟁도 전개될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소속 관료들 간 상당한 알력과 힘겨루기도 있을 것이다. 흔히 이상적 역할분담방안으로 논의되는 바와 같이 국가교육위원회는 정책입안을 하고, 교육부는 관련 행정과 집행만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정책입안을 하지 않는 교육부장관과 관료들을 어느 임명권자가 가만히 두겠는가? 그리고 이를 뻔히 알고 있는 관료들의 정책입안을 통한 영향력 중대 행위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교육감들을 포함하여 여소야대의 국회(교육위원회 등)까지 정책경쟁에 참전하게 되면 교육정책은 그야말로 공전에 공전을 거듭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연유에서인지 글을 쓰는 현재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시행령(대통령령)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12일에 입법예고가 되었으니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어찌면 시행령 제정을 거쳐 본격 출범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상당한 조정기간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워낙 법률이 포괄적으로 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운영방식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시행령에 담아야 할 세부 내용들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어렵사리 통과된 법률인 만큼 동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사회적 합의 도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입법취지는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준비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부족했던 정치적 정당성 구축 작업도 전개될 필요가 있다.

최근 교육환경을 보면 새 정부의 개혁 과제는 막중하다.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교육의제 재설정 및 우선순위 조정, 4차 산업혁명시대 본격화에 따른 미래교육체제 도입, 대학재정 확보와 지방대학 존폐 위기 극복, 사회 양극화와 교육복지 확충, 교원양성제도 개편과 현직 교원 역량 강화 등 하나 같이 합의와 협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난망한 과제들이다. 구조를 앞세운 거버넌스 변화만으로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는 넌센스이다.

교육 거버넌스의 변화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가치는 현장 교육자들이 마음껏 가르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의 조성이다. 그러나 단위학교에 대한 상급교육행정 관청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고, 아직도 학교는 지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거버넌스 개편에 앞서 교육법령의 근본적 개혁이 요구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내용 중 학교 관련 규정인 제4장(제23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의 모습은 자율성보다는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는 국가와 교육감이 정해놓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이 정해놓은 교과를 가르쳐야 하며, 정해놓은 기간 내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별한 수업과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학습의 결과물로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만들어 구비해야 하고, 학습부진아에 대한 교육적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학교회계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정확하게 관리해야 하고, 이러한 시스템 운영에 관해 장관과 교육감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얼핏만 보더라도 학교가 갖는 운영에서의 자율성은 쉽게 그려지지 않는다(나민주 외, 2020). 그래서 겉보다는 속을 바꾸는데 집중해야 한다. 오늘날 교육부 폐지론이 나오는 이유가 교육부가 가진 수많은 법령들과 관료적 규제들이 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는 점은 그저 충격요법식 조작개편이라는 얇은 발상으로는 절대 극복하기 어려운 고질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취지도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 가치의 회복을 통한 집권적 교육 관료주의의 폐해 극복이었다. 희망컨대 신설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러한 필수적 개혁과제 중 단 몇 개라도 제대로 그 추진전략과 실천방안을 충실하게 제시하면 국민적 지지를 얻을 것이고 이를 동력원으로 삼아 안정적 개혁기구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대통령의 임파워먼트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새롭게 선출되는 교육감들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오늘날 학교조직은 전통적 학습기능 이외에 생활지도 또는 인성교육, 돌봄 또는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다목적 공간이다. 민선교육감체제가 본격 출범한지 십수년이 지났지만 학교지원기능의 프레임은 추동주체가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공급자중심, 관료적 방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가 지원의 대상인데, 그 지원이 학교의 교육력 회복(학습과 생활지도, 돌봄을 중심으로 한)과 자율성 신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거버넌스 변화가 모색되는 이 시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영역이다.

새롭게 임명 또는 선출되는 교육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각 위원들, 그리고 교육감들의 자질과 역할이 매우 중차대해 보인다. 교육정책은 형성과정에서부터 결정과 추진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정책영역보다 힘든 설득과 타협이 중요한 분야이다. 아쉽지만 우리 교육행정 전통에서 대화와 합의에 기초한 정책의 형성과 설득과 협치에 기초한 정책 추진 노력은 매우 부족하였다. 그래서 이번에 임명 및 선출되는 국가 및 시도의 교육 수장들은 저마다의 진영 논리와 좁은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탁월한 조정자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민, 의회, 언론, 시민단체, 관료들을 설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교육정책 최고위 기구에서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자라나는 학생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협치의 관행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나민주, 박상완, 이정미, 김민희, 장덕호, 박소영, 김지연, 오혜근(2020). 학교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행정 혁신 방안 연구.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KLEI 2020-1.
- 문명재(2009). 정부조직개편의 정치주거적 반복성과 실제. 한국공공관리학보, 23(4), 23-41.



| 시론 |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육: 교육복지, 재구조화

김민희 | 대구대학교 교직부교수

코로나19는 기존의 불리한 위치에 있던 학생들의 불리함을 범위적 측면, 내용적 측면에서 더 강화시키고, 더 복합적인 불리함으로 확장시키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김경애 외(2020)의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학생들이 코로나19시기에 겪고 있는 복합적 불리함을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첫째, 코로나19시기에 불리한 학생의 범위가 넓어지고 불리함의 정도가 심해졌으며 전인적 성장에도 치명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문을 닫자, 사교육 혹은 부모의 교육 관여와 같은 대체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생들은 다차원적인 배제와 고립을 경험하고 있었다. 학습뿐 아니라 건강, 여가 및 활동, 안전, 관계,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등 삶의 전방위에 걸쳐 불리함의 깊이가 더해지고 있었다. 코로나19 확산시기에 학교 수업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 관계성 및 공동체성의 결핍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더욱 더 불리한 결핍돌로 작용하였다. 둘째, 코로나19가 가장 확산되었던 시기에는 교육적 불리함이 더 강화되었다. 교육적 불리함의 특징은 생활리듬이 망가지면서 나쁜 습성이 고착되고 건강관리가 안되는 것, 스스로 하기 어려운 낙담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무력해진 것, 학력을 비롯한 다차원적인 역량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가 장기화되면서 학습과 교류의 장이 빼앗기게 되고, 취약계층 학생들의 성장기회는 더 줄어들고 있었다. 코로나19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어찌보면 삶의 전부였던 ‘학교’를 빼앗긴 것과 마찬가지로 다가왔다. 셋째,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유사하게 대응을 했지만 각 학교, 각 지역의 움직임은 모두 달랐다. 특히 코로나19가 심해져 학교가 문을 닫았던 상황에서도 남다르게 대응을 했던 학교들도 있었다. 이러한 학교들의 특징은 이미 취약계층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 전체가 집단적으로 고민하는 문화가 축적되어 왔다는 점,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선택과 이를 밀어주는 학교 관리자 등의 리더십이 존재했다는 점에 있었다. 특히 구성원들의 자발성이 더 확장되는 방향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취약계층 학생들의 필요에 맞는 지원체계를 갖추어오고 있었던 학교, 지역의 경우에는 더 긴밀하고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

취약계층 학생들은 코로나19시기에 삶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문제상황에 부딪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교가 문을 닫고 비대면 온라인수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면서 학년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난 교육격차 또는 학력격차는 취약계층 학생뿐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송기창, 2021; 동아일보, 2020). 중간층이 없이 상하위권으로 성적 분포가 나뉘며 심화되는 현상은 경제적 문제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이 재구조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함을 알려주었다. 그간 교육복지라는 이름으로 많은 지원이 있었고, 또 확대되어 왔다. 그런데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까지 완성되면서 학비 및 급식에 대한 부담은 없어졌지만 학력에

대한 부담은 이전보다 훨씬 커졌고 코로나시기에 겪었던 심리, 정서적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대학진학을 앞둔 고등학생들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기초학력이나 학업습관 등 가장 기본적인 교육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초등 저학년의 경우에는 돌봄 공백을 포함하여 학력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결과가 현재도 연일 보도되고 있다. 자아정체성과 또래 관계 형성이 필요한 중학교 단계에서 지원 방식은 여전히 일방적이다. 학교가 문을 닫고,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줄어들며, 오프라인 상황에서 작동하던 지원체제가 무너지면서 오로지 스스로를 관리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불리함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코로나가 가져온 이러한 불리함들이, 코로나 이후에 자연스럽게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미 복합적 불리함이 자리잡은 상황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육복지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할 필요를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새로운 정부에 기대하는 교육복지 관련 재구조화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교육복지 지원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만은 아니며 분리의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교육급여, 교육비지원, 초·중등학생 국가장학금 등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수혜받는 학생의 규모나 지원 금액은 여전히 적다. 보편복지를 제외한 개인별 필요를 중심으로 보면 학생당 교육비 지원규모는 매우 적으며 학교교육과정을 따라가기에는 학비 외에도 부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별도 프로그램 중심 교육복지 지원은 개별적 지원의 모습은 갖추고 있으나 그 효과가 나타나기엔 한계가 있다. 2002년 처음 교육복지사업이 국가 정책으로 수립되어 시작된지 20여년 이상이 지나고 있지만 추진 방식은 동일하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육복지 지원은 별도의 프로그램 참여가 아니라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학력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개별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다. 학력을 포함한 심리, 정서, 건강, 관계 등 복합적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와 그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 학생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행동 패턴을 분석, 진단하며 예측을 통해 다양한 해결방법(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현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교육청에서 대부분 추진하는 사례관리 결과, 개별 학생들이 지원받는 장학금이나 프로그램, 심리 정서적 진단 결과, 타부처나 기관에서 확보한 DB, 참여하는 지역사회 기관 등은 학업성취 자료와 결합하면서 개별적 학생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학생 개인정보 활용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갈등 등은 윤리적 측면에서 해결해나가야 한다.

셋째, 교육복지 거버넌스 구축이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새정부에서는 중앙과 지방, 단위학교 및 지역사회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사회 중심 교육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나타나지 않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지난 코로나시기,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놓지 않았던 것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교육복지 지원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김민희 외(2020)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 162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는 식사/식품, 방역/건강, 현물/현금, 학습, 생활/여가, 돌봄, 기타 등 매우 다양한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일반 초·중등학교, 특수학교 등 학교에 소속된

모든 학생에 대한 보편적 지원 뿐 아니라, 특별히 교육복지 지원대상(저소득층, 교육비지원대상, 교육급여수급자 등), 드림스타트 등 사례관리 대상자, 특수교육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별지원 대상자 중에서는 ‘교과 담당교사’에 대해 개별적으로 지원한 지역도 있으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대학생 멘토링 사업도 추진하였고, 읽기곤란(한국어능력 부족) 등 내용적 기준을 적용한 지역도 있었다. 학교 외에도 행복지구 민간공모단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드림스타트 경로당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한 선별 지원 등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복지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사회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통합적이고 새로운 접근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 시기는 취약계층 학생들이 가진 복합적인 불리함의 고리를 끊고, 보다 더 안전한 사회적 지원망을 구축해야 할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만 이루어지던 ‘학습’이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시작일 것이다. 취약계층 학생들은 보다 세심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취약계층 학생들의 지니는 불리함은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매우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학교와 지역사회는 보다 강한 연대감으로 취약계층 학생 한명 한명을 지원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새정부에서는 무엇보다 교육복지 지원을 우선순위로 두고 국가적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참고자료

- 김민희 외, 2020,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학생 지원현황 분석』, 한양대학교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김경애 외, 2020, 『코로나19 확산 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송기창, 2021, 『교육격차의 책임 소재』, 아시아경제, 2021. 02. 04일자.
 동아일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20.7.21.일자. 『중위권 학생 확 줄고 하위권 급증.. "교사 생활 15년만에 처음"』

연구윤리 시리즈 1

- 연구윤리 인식 수준, 연구부정행위 규정 -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회원들의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1차(연구윤리 인식 수준, 연구부정행위 규정), 2차(연구윤리 위반 유형, 처리결과)에 걸쳐 뉴스레터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한국연구재단(202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윤리 위반 사례에 관한 연구. 이슈리포트'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대학교원의 연구윤리 인식 수준 진단

- 한국연구재단에서는 2020년에 대학교원 총2,695명을 대상으로 '대학 교원의 연구윤리 인식수준 조사'를 실시하였음. 이 결과는 2019년 총2,1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여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인식 수준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한국연구재단, 2019a; 2020b)
 - 최근 2년 동안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윤리의 실천과 실행의 중요성 인식수준과 연구윤리 준수 수준은 약 92%로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실천 및 실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연구자 개인의 연구윤리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에 대해 2년 모두 국내외 논문 및 보고서 표절 관련 확인 절차와 국내외 정부, 대학, 학회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 관한 자료 등을 제일 높게 제시하고 있음
- 대학 등 연구기관인 연구자 소속기관의 연구윤리 준수 수준에 대해 연구자들은 높다고 인식(77.54%)하고 있음. 이는 2019년 74%보다 상승한 수치임. 반면 10.75%는 소속된 대학 등 연구기관의 연구부정행위 의혹 제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
 - 대학 등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검증과정 공정성의 한계 요인으로서는 연구자 간 온정주의(28.63%)와 연구부정행위 판단 기준 부족(26.92%)이 가장 높게 제시되고 있음. 2019년 조사에 비해 연구자 간 온정주의에 대한 인식은 감소한 반면에 연구부정행위 판단 기준 부족에 대한 인식은 증가하였음
 - 2020년 조사결과는 2019년 조사에서 연구자 간 온정주의(35.73%), 연구부정행위 판단 기준의 부족(23.43%), 연구윤리 검증시스템의 미흡(20.65%)로 나타난 결과에 비해 모두 낮아짐
- 연구부정행위 및 대학 연구윤리 관련한 기준과 검증절차 이해도와 관련해서 연구부정행위 기준은 이해하고 있지만 검증절차에 대해서는 부족한 편임. 또한 타 연구자의 연구 부적절 행위에 대해서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대학 등 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연구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들의 발생 정도가 매우 많다고 인식하는 수준은 부당한 저자 표시(논문 대필, 자녀 끼워 넣기 포함) → 표절 → 연구 노트(실험 데이터) 작성 및 부실관리 → 연구비 부정(연구비 유용, 인건비 착용, 불용 장비 구입) 등임. 이런 인식수준은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5년간 전체 연구부정행위 의혹 사실 판정건수의 판정유형 수치와 일치함
 -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의 미근절 원인으로는 연구자 간 치열한 경쟁과 양적 위주의 업적평가 시스템으로 인한 성과 지상주의(35.82%), 연구부정행위나 연구부적절 행위를 통해서 얻는 장점 및 실익이 큼(17.66%), 연구윤리 관

런 충분한 교육 인프라 및 예방 시스템 부족(11.25%) 등을 제시하고 있음. 이런 인식수준은 2019년도에도 비슷하게 나타남

〈표 1〉 최근 5년간 전체 연구부정행위 의혹 사실 판정건수 판정유형

연도	위조	변조	표절	부당저자	중복 게재	기타
2015	0	3	23	3	6	6
2016	4	1	30	30	17	10
2017	4	2	18	9	13	12
2018	3	6	33	41	10	17
2019	8	5	70	127	25	33
총합	19	17	174	210	71	78

출처: 2019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

2. 연구부정행위 규정

○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연구부정행위 범위)에는 연구부정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②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③ 표절: 다음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④ 부당한 저자 표시: 다음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⑤ 부당한 중복 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⑦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또한 한국연구재단(한국연구재단, 2020c)은 다음과 같이 기타 연구윤리 위반의 유형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음

- ① 갑질: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에서 제시한 개념): 위법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적법 또는 재량권 내의 행위라도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갑질에 해당. 또한 연구비 공동관리(대학원생 인건비 횡령), 논문 도용, 사학비리 등 교육 분야의 갑질은 통상 권력형 범죄의 양태를 보이며 발생
- ② 성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성폭력 관련 법에 의해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강간 등 성폭행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성추행을 의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기타 성비위: 불륜 등 기타 부적절한 관계 등
- ③ 미성년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록: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 참여 행위 자체는 법령상 금지되어 있지 않음. 다만,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 미성년자가 논문의 공저자로 등록되기 위해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당한 역할 및 기여가 제시되어야 함

• 2022년 학회주요소식 •

1. 학술지 발행

「교육행정학연구학술지」 발행 일정

교육행정학연구(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는 사회과학분야의 등재학술지입니다. 2004년 이래 등재 학술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시 접수체제로 운영(홈페이지 접수)하고 있으니, 연구자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권호		접수 마감일	발간 예정일
40권	1호	2022년 03월 05일	2022년 04월 30일
	2호	2022년 04월 30일	2022년 06월 30일
	3호	2022년 06월 30일	2022년 08월 31일
	4호	2022년 08월 31일	2022년 10월 31일
	5호	2022년 10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문의: 김보경 편집간사(010-5573-8661 / keas1967@nate.com)

「교육행정학연구」 논문투고 및 인용 활성화 요청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에서 발행되는 '교육행정학연구'는 2004년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어 꾸준히 교육행정 전반의 깊이 있는 연구로 한국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정되어 있는 등재학술지 계속 평가와 관련하여 논문의 투고율과 인용지수가 중요한 사안으로 자리잡고 있어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논문투고와 KCI 논문 인용을 부탁드립니다.

※ KCI 인용지수는 재단 우수등재, 등재, 등재후보 학술지 간의 인용된 횟수만을 가지고 산출된 지수로써, 해외 학술지에 인용된 횟수는 포함되지 않음.

※ 논문의 저자가 피인용 문헌을 기재할 때,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발행권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KCI 인용지수 산출시 누락될 수 있음.

2. 회비 납부 안내

회원님의 연회비 및 이사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학회 운영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원님들의 회비 납부가 중요합니다. 현재 연회비와 이사회비를 상시 수납받고 있습니다. 아래의 연회비 및 이사회비 규정을 참고하시어 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목	회비
이사 임원회원 이사회비	100,000 원
일반 정회원 연회비 (※ 정년퇴직한 비이사회원은 면제)	50,000 원
학생(전일제) 회원 연회비 (※ 전일제 석사과정생에 한정함)	30,000 원
기관회원 연회비	100,000 원
신규회원 입회비(※ 개인 및 기관 회원 공통)	10,000 원

※ 2021년부터 정회원비 3~5회분 선납제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3. 정책연구 수주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는 올해 4월까지 3개의 정책연구 과제를 수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회 회원님의 정책연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총 연구비 (간접비)	발주기관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 연구	김민희(대구대)	2022. 2. 8 ~ 2022. 7.31	49,414,000원 (2,964,840원)	한국장학재단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진단 용역	김민희(대구대)	2022. 3. 14 ~ 2022. 6.11	12,000,000원 (720,000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국립학교 제도개선 방안 정책연구	김민희(대구대)	2022. 4. 4 ~ 2022. 10.3	10,000,000원 (600,000원)	교육부

4. 회원 소식

1) 한국교육복지연구소 김인회 소장, 사단법인 열린교육복지포럼 설립 및 이사장 취임



우리 학회 회원이신 김인회 소장님의 사단법인 열린교육복지포럼 설립 및 이사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2) 연세대학교 교육학과(교육행정 전공)박사, 모영민회원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임용



우리 학회 회원이신 모영민 선생님의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조정본부 데이터전략실 부연구위원 임용을 축하드립니다

3) 뉴욕주립대버팔로 교육행정전공박사, 임선빈회원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임용



우리 학회 회원이신 임선빈 선생님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영재교육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임용을 축하드립니다

5. 회원 신간 안내

〈교육이 바뀌어야 나라가 산다〉 김인희 저/ 바른북스/2022.02.04. 출간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본질로부터의 이탈이며, 우리 사회와 교육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효율 패러다임'이 주된 원인이다. 교육의 본질은 인간의 성장이며 성장에 최우선의 중점을 두는 '성장 패러다임'으로 학교교육을 비롯한 교육운영 전반의 관점과 실천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교육의 근본적 문제와 그로 인한 병폐는 치유되기 어렵다. 이 책은 효율 패러다임의 문제를 진단 분석하고 그 해법으로서의 성장 패러다임의 길을 제시한다.

〈교육행정학〉 주삼환 신봉섭 이석열 김병운 김용남 공저/학지사/2022.02.25. 출간



이 책은 대표 저자인 주삼환 충남대학교 명예교수께서, 2005년과 2006년 두 해에 걸쳐 한국교육행정학회의 「교육행정학의 지식 기반과 지적 구조」에 관한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교육행정학의 지적 개념도에 기초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교육학과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위한 수업,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가의 행정 실무, 그리고 교수 및 학자의 연구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구성하였다.

〈교육법의 이해와 실제〉 대한교육법학회, 고전, 하봉운, 김용, 이덕난 외 11인/ 교육과학사/2022.02.28. 출간



이 책은 학부와 대학원, 교원·교육전문직·교육행정직 연수 등에 교육법 강좌가 널리 개설되고, 교육현장에 교육법 마인드가 안정적으로 자리잡는 날이 빨리 다가오기를 소망하는 학계와 현장의 마음을 담아서 기획되었다. 교육법학자(교육학, 헌법학, 입법학, 행정법학, 변호사 등)들이 모여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교육법의 모습을 하나의 예시적인 형태로 그려보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대입제도, 신분제도인가? 교육제도인가?〉 서남수 배상훈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2022.02.28. 출간



복잡한 대입제도를 풀어서 설명했고 대입제도 전반을 살펴볼 수 있도록 수십 년에 걸친 방대한 자료와 시대별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지금의 제도는 역사적 진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산물임을 밝혔고, 대입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친 교육적, 사회적 현상을 조명하고, 신분 제도적 성격을 지닌 대입제도가 영향을 끼친 사회 변화도 살폈다. 마지막으로 교육 제도로서 대입제도가 지향할 방향을 제안했다. 각 장에 덧붙인 실제 사례들은 정책 연구자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초중등 예비교사를 위한 교직실무〉 신재홍 저/동문사/2022.04.29. 출간



교육은 국가와 사회 발전의 초석이고 그 영향이 심원하므로 '백 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百年之大計)'이라고 한다. 이는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교육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자질'이 중요할 것이다.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하기에 국가 사회에서의 경쟁력은 곧 교직사회의 경쟁력이고, 교직사회에서의 경쟁력은 우수하고 유능한 교사의 양성이다.

본서는 교직실무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쉽게 풀어쓰면서 〈학습목표〉, 〈Keyword〉, 〈생각해 봅시다〉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교육현장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6. 학회 행사소식

1) 2022년 제1차 이사회 개최

- 가. 일시: 2022년 1월 27일 (목) 오후 2시
 나. 장소: ZOOM 회의실
 다. 참석: 당연직 및 선임직 이사, 사무국 담당자 등
 라. 안건: 2022년도 50대 임원 및 위원회 소개,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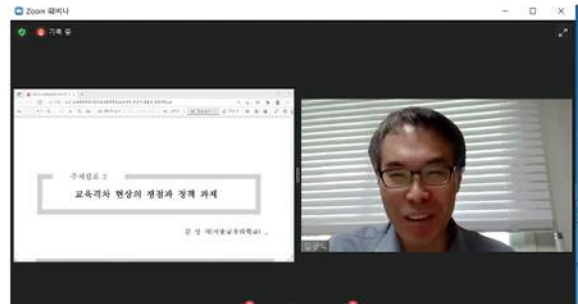
2) 세대교류연구 위원회 2월 세미나 개최

- 가. 일시: 2022. 2. 19(토) 오전 10:00~12:00
 나. 장소: ZOOM 온라인
 다. 주제: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 과정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형태발생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라. 발표: 한영욱(교원대)
 토론: 변기용(고려대), 곽태진(고려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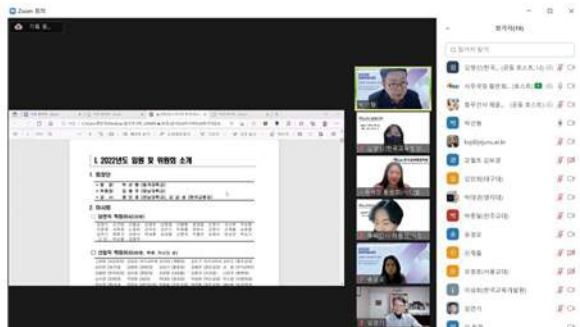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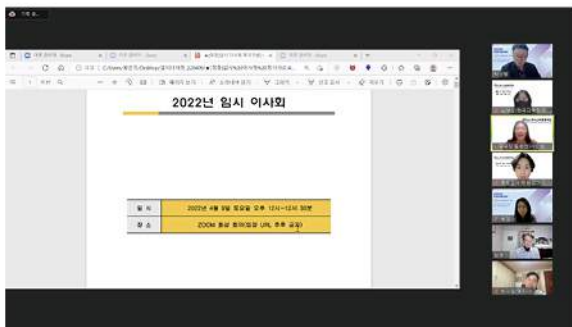
3) 2022년 춘계학술대회 (4개 학회 연합학술대회) 개최

- 가. 일시: 2022년 4월 9일(토) 9:30~16:00
 나. 장소: Zoom 웨비나를 이용한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다. 주제: 새 정부 교육정책의 과제
 라. 프로그램
- 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이후 교육거버넌스 변화 및 향후 과제/ 발표자: 김용 교수(한국교원대)
 - 2) 교육격차 현상의 쟁점과 교육과제/ 발표자: 김성식 교수(서울교대)



4) 임시이사회 개최

- 가. 일시 : 2022. 4. 9일(토) 12:00~13:00
- 나. 장소 : ZOOM 온라인
- 다. 참석 : 당연직 및 선임직 이사, 사무국 담당자 등
- 라. 안건 : 2021년도 결산 보고 및 기타 안건 논의



5) 세대교류연구 위원회 5월 세미나 개최

- 가. 일시 : 2022. 5. 21(토) 오전 10:00~12:00
- 나. 장소 : ZOOM 온라인
- 다. 발표 주제 및 발표자
 - 발표자 : 주현준(대구교대)
 - 주 제 : 교장리더십에 관한 양적연구의 문제와 과제: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 토론자 : 권순형(한국교육개발원)
- 발표자 : 김지현(성신여대)
 - 주 제 : 책무성 정책의 실행과 효과성 평가 연구: 양적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 토론자 : 모영민(한국교육개발원)

6) 인천교육행정정책연구회 회장단과 간담회 개최

가. 일시: 2022.5.15.(토)10시 30분

나. 장소: 한국교육행정학회사무실

다. 내용: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 사무관 이상의 교육행정직 연구모임인 인천교육행정정책연구회(회장, 백운영 인천광역시 교육청교육연구원 총무부장)와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박선형 동국대 교수) 사무국과의 간담회가 마포구 학회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간담회를 통해 우리 학회와 인천교육행정정책연구회가 인천광역시의 교육행정 및 정책 분야 공동연구 수행과 학회 회원들의 현장연구에 대한 향후 상호 협조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교육행정 이론과 실제의 연계성 강화와 교육연구의 현장 적용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교육행정학회와 인천교육행정정책연구회 간의 활발한 상호협력이 더욱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7) 향후 학술대회 개최

가. 2022년 하계 학술대회(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분과학회 세션 운영)

- 주 제: 한국,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교육
- 기획주제: 새 정부에 바란다, 한국교육의 핵심과 쟁점, 그리고 비전
- 일 시: 2022년 6월 29일(수) ~ 30일(목)
- 장 소: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및 종합강의동 및 온라인

나. 2022년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 학술대회

- 주 제: 교육행정의 공공적 가치 탐색: 미래를 위한 재설계
- 일시(안): 2022년 12월 3일 (토) 예정
- 장소(안): 동국대학교

※ 동국대학교 교원정책중점연구소가 연차학술대회 공동주최자로 250만원, 직업능력개발원이 300만원 재정지원(예정)

8) 2022 KRIVET 패널학술대회 공동 개최

우리 학회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2022 KRIVET 패널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22 KRIVET 패널 학술대회 논문 공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 : 2022년 6월 16일(목) 18:00까지
- 계획서 심사결과 안내 및 데이터 제공 : 2022년 6월 23일(목) 이후
- 최종 논문 제출마감 : 2022년 9월 5일(월) 18:00까지
- 학술대회 개최 : 2022년 10월 5일(수)~6일(목)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 자세한 내용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홈페이지(www.krivet.re.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한국연구재단 2022년 학술대회 지원 선정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한 2022년 학술대회 지원사업 평가에서 최종 지원 대상 학술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지원 금액은 990만원입니다. 학술대회 지원사업계획서 작성을 전달해주신 학술위원회(위원장: 송경오 교수)의 협력적 지성과 집합적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회 사무국은 2022년 연차학술대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8. 한국교육행정학회 사무실 이용 안내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는 회원님들께서 편리하게 학회 사무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사무용품 비치, 와이파이 설치, 학회 출간물 정리, 커피/차 구비 등 대대적으로 사무실 공간을 정비하였습니다. 분과 위원회 활동, 정책연구과제 추진 등과 같이 학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회 사무실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실을 사용하시기 전에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원활히 이용하실 수 있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 사무실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도화동, 마스터즈 타워 빌딩), 9층 902호

※ 이용 문의: 총무간사 채윤정(keas1967@daum.net)

9. 2022년 회비납부 명단(2022년 4월 21일 기준)

1) 2020년도 3개년 회비 납부자 명단(5명)

김은정, 김효정, 이한나, 정설미, 정희욱

2) 2020년도 5개년 회비 납부자 명단(4명)

구성우, 나민주, 엄문영, 허병기

3) 2022년 신입회원 회비 납부자 명단(31명)

강민자, 공후재, 권수진, 권은비, 김금련, 김다령, 김라나, 김보연, 김수진, 김택균, 남경민, 남기곤, 문준식, 문태열, 배정훈, 서유림, 서지혜, 송광자, 송유진, 신은경, 양정모, 유종훈, 윤경숙, 이만우, 이미영, 이승현, 정보현, 정재원, 최윤실, 한상덕, 현영섭

4) 2022년 기존회원 회비 납부자 명단(108명)

강민수, 강원근, 강은숙, 경미선, 고장완, 권순형, 권초아, 김규태, 김도기, 김민조, 김민희, 김범주, 김영식, 김정현, 김정희, 김제현, 김지선, 김지현, 김혜진, 김희규, 남인혜, 류명혜, 문보경, 문지윤, 문찬주, 민병성, 민윤경, 박남기, 박동찬, 박상완, 박세준, 박세훈, 박소영, 박소영, 박수아, 박수정, 박승중, 박유민, 박재은, 박정우, 박태양, 박효원, 반상진, 배상훈, 백규호, 백정하, 변기용, 선애경, 설가인, 손다운, 손판이, 송기창, 신재홍, 신하균, 신현석, 심현기, 안지혜, 안희진, 양윤정, 엄준용, 염민호, 유길한, 이경호, 이기용, 이길재, 이미희, 이상철, 이성희, 이수정, 이승희, 이쌍철, 이안나, 이영신, 이재덕, 이창열, 이현주, 이호준, 임수진, 장덕호, 장우천, 정동욱, 정성수, 정세환, 정영현, 정유리, 정주영, 정현석, 조미애, 조석훈, 주현준, 지은림, 차지철, 최성규, 최연우, 최재원, 최준렬, 최지원, 하동엽, 한송이, 한재범, 함승환, 허정, 황수정, 황영식, 황윤한, 황재운, 황정훈, 황준성

5) 법인 이사회비 납부자 명단(1명)

윤정일

6) 이사회비 납부자 명단(34명)

고전, 김규태, 김도기, 김명수, 김민조, 김민희, 김범주, 김용, 김이경, 김정희, 김희규, 박남기, 박상완, 박세훈, 박수정, 박영숙, 반상진, 백정하, 신재홍, 양성관, 엄문영, 오범호, 유길한, 이쌍철, 이인희, 이재덕, 임수진, 정동욱, 정성수, 주현준, 최준렬, 함승환, 황준성

7) 2022년도 기관회원 납부

한국사학진흥재단, 전주교육대학교, 전북교육정책연구소

※ 연회비 또는 이사회비를 납부하셨으나 납부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 학회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 담당: 김명신 부간사(010-4023-8625, keas1967@daum.net)

10. 제 50대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 임원

■ 회장단

- 회 장 : 박선행(동국대학교)
- 부 회 장 : 김병주(영남대학교)
- 감 사 : 염민호(전남대학교), 김갑성(한국교원대)

■ 이사회

• 당연직 이사 33인

김영식	신극범	신철순	김명한	남정걸	이형행	윤정일	신중식	김신복	주삼환
이종재	서정화	노종희	강무섭	강인수	박종렬	정영수	김명수	신재철	송광용
임연기	허병기	이윤식	박세훈	김성열	신현석	주철안	김혜숙	반상진	박남기
고 전	박선행	김병주							

• 선임직 이사 66인, 위원 가나다순

고장완 (성균관대)	김갑성 (한국교원대)	김규태 (계명대)	김도기 (한국교원대)	김민조 (청주교대)
김민희 (대구대)	김병찬 (경희대)	김성기 (협성대)	김왕준 (경인교대)	김 용 (한국교원대)
김용련 (한국외대)	김이경 (중앙대)	김정희 (대교협)	김희규 (신라대)	나민주 (충북대)
남수경 (강원대)	박경호 (KEDI)	박대권 (명지대)	박상완 (부산교대)	박소영 (숙명여대)
박수정 (충남대)	박영숙 (KEDI석좌)	박종필 (전주교대)	박주형 (경인교대)	배상훈 (성균관대)
백정하 (대교협)	변기용 (고려대)	송경오 (조선대)	신정철 (서울대)	신재흡 (한성대)
신철균 (강원대)	안선희 (중부대)	양성관 (건국대)	엄문영 (서울대)	엄준용 (중부대)
오범호 (서울교대)	유길한 (진주교대)	윤홍주 (춘천교대)	이길재 (충북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이동엽 (KEDI)	이석열 (남서울대)	이수정 (단국대)	이승호 (KEDI)	이쌍철 (KEDI)
이인희 (제주대)	이재덕 (한국교원대)	이정기(백석대)	이정미 (충북대)	이필남 (홍익대)
임수진 (광주교대)	장덕호 (상명대)	전제상 (공주교대)	정바울 (서울교대)	정제영 (이화여대)
정동욱 (서울대)	정성수 (대구교대)	정수현 (서울교대)	주현준 (대구교대)	차성현 (전남대)
최정윤 (KEDI)	최준렬 (공주대)	하봉운 (경기대)	함승환 (한양대)	홍창남 (부산대)
황준성 (KEDI)				

■ 분과위원회 구성

분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부회장선출 관리위원회	이정기 (백석대)	배상훈 (성균관대)	김한나(총신대) 이희숙(강남대)	박삼철(단국대) 주영효(경상대)	신재흠(한성대) 최정윤(KEDI)	유평수(전주대)
윤리위원회	김민희 (대구대)	채재은 (가천대)	김용남(KEDI) 장상현(KERIS)	오세희(인제대)	오예진(대교협)	이진권(서울대)
세대교류 연구위원회	이성희 (KEDI)	주현준 (대구교대)	권순형(KEDI) 송효준(KEDI)	김한솔(산본고) 임종현(KEDI)	모영민(연세대) 채윤정(동국대)	민윤경(KEDI)
소식논문상 위원회	서정화 (홍익대명예)	노종희 (한양대명예)	강인수(수원대석좌) 이종재 (서울예대 법인이사장)	김해숙(연세대) 임연기(공주대명예)	박세훈(전북대) 주삼환(충남대명예)	신중식(국민대명예)
주삼환리더십상 위원회	김성열 (경남대)	한유경 (이화여대)	김이경(중앙대) 신재흠(한성대)	박남기(광주교대) 천세영(충남대)	박영숙(KEDI석좌)	신봉설(나사렛대)

11. 제 50대 사무국 소개

제 50대 사무국이 새롭게 구성되어 2022년 동안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육행정학회		홈페이지: https://keas1967.com E-Mail: keas1967@dam.net
학회	주소	(0415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마스터즈타워빌딩) 9층 902호
사무국장	성명	황은희(경주대학교, jobcoach1@naver.com)
간사	성명	총무간사: 채운정(동국대학교) -업무: 학회 및 학술대회 총괄업무 - keas1967@daum.net , 010-9189-2837
		총무부간사: 김명신(동국대학교) -업무: 회원 및 회비 납부관리, 홈페이지 관리 관련 업무 - keas1967@daum.net , 010-4023-8625
		편집간사: 김보경(경인교육대학교) -업무: 교육행정학연구 투고 및 발간 관련 업무 - keas1967@nate.com , 010-5573-8661
		편집부간사: 김정수(경인교육대학교) -업무: 교육행정학 연구 투고 및 발간 업무 지원, 게재료 납부 확인 - keas1967@nate.com , 010-7420-8587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 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헌장은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대안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회원은 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교육행정학과 한국교육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 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⑤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⑥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회원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⑧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007. 4. 27

한국교육행정학회